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 |
|----------|-----|
| 의안 번호 | 476 |
|----------|-----|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 출 자 : 공 주 시 장

1. 제안이유

공주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남형 스마트팜 부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농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농가를 육성하고자 하나 수요 및 관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시설원예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적절한 임대료로 창농 할 수 있는 스마트팜 부지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의 창업 영농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충남형 스마트팜 부지 조성사업(공모)
- 위치 :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84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10. ~ 2026. 8.
- 사업비 : 4,538백만원(도비 1,275 / 시비 3,263)
- 사업규모 : 5.1ha(스마트팜 부지조성)
- 사업내용 : 사업부지 및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시설 등의 기반 시설 조성

나. 취득재산

- 취득예정금액 : 2,238백만원(도비 125 / 시비 2,113)
- 토지 : 24필지(51,730.4m²) / 이인면 발양리 840-1번지 외 23필지

다. 향후 추진계획

- 2024. 10. ~ 11. : 2024년 3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 및 승인
- 2024. 11. ~ 12. : 토지 보상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 추진
- 2025. 5. :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 및 승인
- 2025. 8. ~ 12. : 기본 및 실시용역 발주, 인허가 추진
- 2026. 1. ~ 7. : 기반조성공사
- 2026. 8. : 공사 준공 및 사업부지 임대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붙임 1.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수시분) 재산목록(토지) 1부.
2. 위치도, 현장사진 및 참고자료(관련문서) 1부.
3. 관련법 조문 1부. 끝.

| 부서명 | 과장 | 팀장 | 담당자 |
|----------------|----------|----------|----------|
| 회계과 (재산관리팀) | 오현규 | 우제훈 | 우제훈 |
| | 840-8250 | 840-8267 | 840-8267 |

[붙임1]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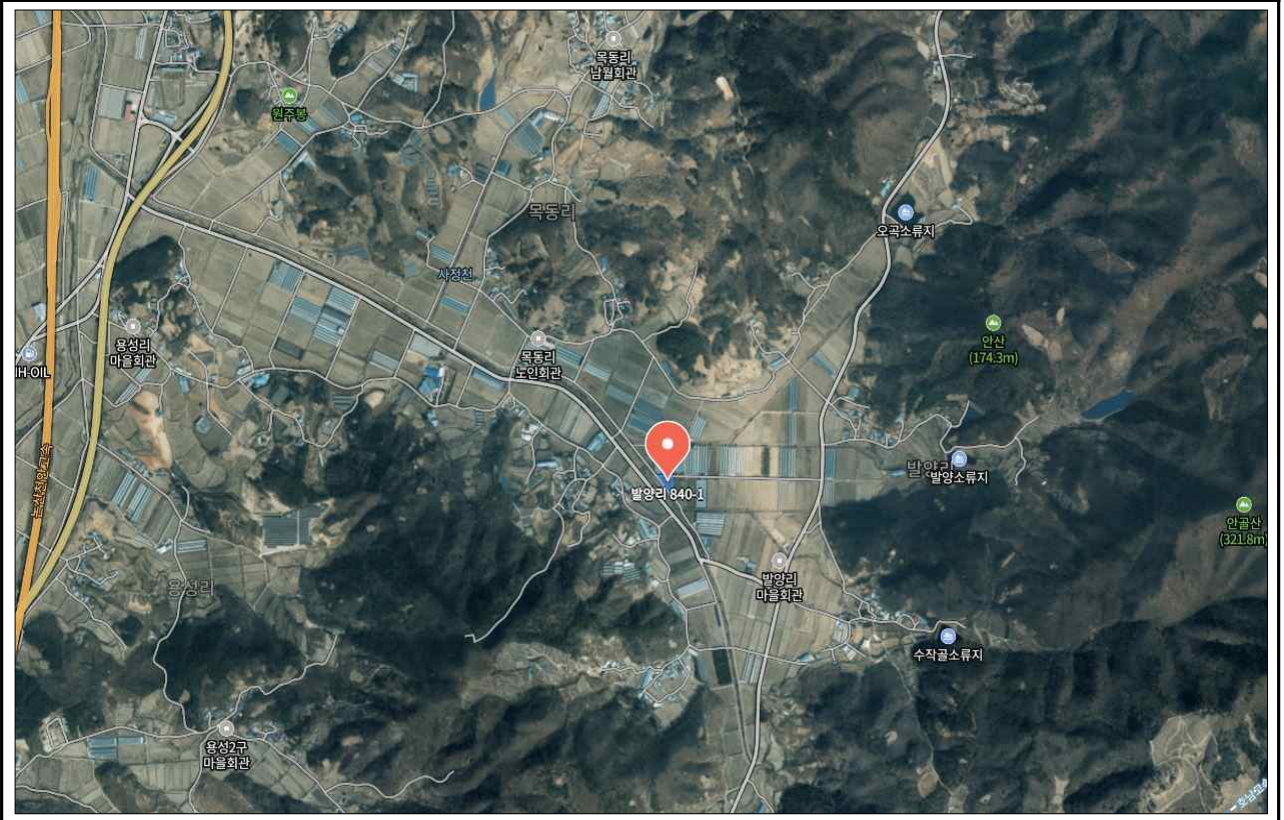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사유 | 취득시기 | 비고 |
|----------|---------|----------------|----------|-----------|------------------|-------|-----|
| | 지목 | 소 재 지 | 면적 | | | | |
| 합 계 | | 24필지 | 51,730.4 | 2,237,917 | | | |
| 1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 | 1,450.4 | 58,741 | 스마트팜 조성 사업 부지 | 2025년 | |
| 2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2 | 3,381.5 | 136,951 | 〃 | 〃 | |
| 3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3 | 3,796.6 | 155,661 | 〃 | 〃 | |
| 4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4 | 3,002.0 | 184,192 | 〃 | 〃 | |
| 5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5 | 839.9 | 54,321 | 〃 | 〃 | |
| 6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6 | 3,976.1 | 163,020 | 〃 | 〃 | |
| 7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7 | 2,962.0 | 121,442 | 〃 | 〃 | |
| 8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8 | 1,506.9 | 61,783 | 〃 | 〃 | |
| 9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9 | 1,488.6 | 61,033 | 〃 | 〃 | |
| 10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0 | 2,978.4 | 122,114 | 〃 | 〃 | |
| 11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1 | 2,226.2 | 91,274 | 〃 | 〃 | |
| 12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2 | 740.9 | 30,377 | 〃 | 〃 | |
| 13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3 | 1,526.2 | 64,050 | 〃 | 〃 | |
| 14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4 | 1,531.7 | 62,800 | 〃 | 〃 | |
| 15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5 | 2,977.8 | 122,090 | 〃 | 〃 | |
| 16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6 | 3,004.7 | 123,193 | 〃 | 〃 | |
| 17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7 | 1,462.4 | 88,038 | 〃 | 〃 | |
| 18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8 | 1,498.4 | 92,394 | 〃 | 〃 | |
| 19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19 | 3,008.2 | 123,336 | 〃 | 〃 | |
| 20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20 | 3,045.1 | 127,894 | 〃 | 〃 | |
| 21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21 | 3,014.5 | 129,624 | 〃 | 〃 | |
| 22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22 | 1,316.9 | 63,211 | 〃 | 〃 | |
| 23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23 | 8.8 | 378 | 〃 | 〃 | |
| 24 | 답 | 이인면 발양리 840-24 | 986.2 | 0 | 〃 | 〃 | 시유지 |

[붙임2]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자료

□ 위치도 < 이인면 발양리 840-1번지 일원 >



□ 전경사진



| | |
|--------|--------------|
| 생산등록번호 | 농업정책과-22867 |
| 등록일 | 2024. 9. 10. |
| 결재일 | 2024. 9. 10. |
| 공개구분 | 비공개(8) |

| | | | | | |
|-------------|--------|----------|------|--------------|--|
| 팀장 | 농업정책과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부시장 | 시장 | |
| | | | | 2024. 9. 10. | |
| 김덕규 | 이철원 | 전경규 | 강관식 | 최원철 | |
| 협 조 자 | 재산관리팀장 | 우재훈 | 기획팀장 | 최원진 | |
| | 예산팀장 | 양현덕 | 회계과장 | 오현규 | |
| | 기획감사실장 | 조선기 | | | |

**- 시설원에 부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변경)추진**



공주시

농업정책과
[원에특작팀]

시설원에 부지형(2단계)스마트팜 조성사업(변경)추진

1. 개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임대형,부지형) 부지형사업 (이인면 발양지구, 정안면 북계지구)중 **이인면 발양지구를 우선 사업량 변경(축소)**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사업현황 [부지형사업비 1ha/5억원]

- 사업명 :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부지형) 조성사업
- 위치 : 이인면 발양지구 및 정안면 북계지구
- 사업기간 : '25년 ~ '27년
- 사업비 : 77.5억원(이인 25 / 정안 52.5)
- 사업내용 : 부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부지 정리, 용배수, 전기, 도로등 기반시설)

3. 변경내역

| 구분 | 당 초 | | 변 경 후 | | 준공시기 | 비고 |
|---------|------------|-------------|------------|-------------|-----------|----|
| | 사업량(ha) | 총사업비(억원) | 사업량(ha) | 총사업비(억원) | | |
| 합 계 | 18.4 | 92.0 | 15.5 | 77.5 | | |
| 이인면 발양리 | 7.9 | 39.5 | 5.0 | 25.0 | '26. 8.준공 | |
| 정안면 북계리 | 10.5 | 52.5 | 10.5 | 52.5 | '27. 8.준공 | |

4. 예상 사업비(시비 104.7억 : 이인면 32.7 / 정안면 72)

(단위 : 억원)

| 구분 | 계 | 토지매입 | | | | 기반조성 | | | 비고 (시비) |
|---------|---------------|-------|------|--------------|-------------|-------|-------|-------|--------------|
| | | 소계 | 도비 | 시비 | | 소계 | 도비 | 시비 | |
| | | | | 시비 | 추가부담금 | | | | |
| 총 계 | 146.7 | 71.2 | 3.75 | 67.45 | | 75.50 | 37.75 | 37.75 | 105.2 |
| | | | | 3.75 | 63.7 | | | | |
| 이인면 발양리 | 45.45 | 22.45 | 1.25 | 1.25 | 19.95 | 23.00 | 11.50 | 11.50 | 32.7 |
| 정안면 북계리 | 101.25 | 48.75 | 2.50 | 2.50 | 43.75 | 52.50 | 26.25 | 26.25 | 72.5 |

5. 담당부서 검토의견

- ① 이인면 발양지구의 사업량(7.9ha⇒ 5ha) 축소하여, **토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함
 - **3회 추경 총사업비 25억의 10%를 토지매입비 반영하여 25억 500만원(도비 1.25억/ 시비 1.25억)**
 - **2025년 추경예산액 42.95억(도비포함)**
- ② 정안면 북계지구 사업은 추후 추진 (사업비 과다투입, 사업비 투입대비 효과성 판단)

6. 행정사항 [이인면 발양지구]

- '24년 9월: 공유재산 심의 승인
- '24년 10월: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토지매입비)
- '24년 12월: 토지 보상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 추진

[붙임3]

관련법 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의 취득 및 처분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